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4. . .
발 의 자	김영길 의원 외 10명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4. . .

발 의 자: 김영길·김낙관·김민성·김영태
김원섭·김정도·김춘남·박교상
박세채·이정희·허민근 의원(11명)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폐기물처리업체 등의 난립을 제한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주변환경을 보호하고 폐기물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점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제270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본 조례안 내용 중 별표 3 ‘바’ 항목이 누락되어 의결·공포된 바 이를 정정하고자 해당 항목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안 제22조제4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제2호가목(3)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음

나. 별표 3 제2호 바목

3. 조 례 안: 붙임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나. 부서검토: 도시계획과, 자원순환과, 종합허가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라. 기 타: 없음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자원순환관련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용도변경 포함)은 별표 28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3 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
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

별표 2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원순환 관련시설 허가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한 자원순환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 허가 기준 (제22조제4항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22호 나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5호 이상(호간 이격거리 부지경계 간 100m 이내)의 가구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 위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5호 미만의 경우, 가장 가까운 가구 부지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 나.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 위치하지 아니할 것
- 다.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소하천정비법」 제2조에 따른 소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저수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마. 「수도법」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중 의료기관, 어린이집은 가목을 따른다.)
- 사. 도로 및 철도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아. 관광지,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표시사항 변경 시 건축물의 용도가 자원순환관련시설일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표시사항)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 및 영업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 비 고

1. ‘가구’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하며, 「농어촌정비법」 제2조 빈집은 가구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전기, 수도시설 기준)
2. ‘도로’는 「도로법」 제1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된 도로를 말한다.
3. ‘철도’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4. ‘관광지’는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를 말한다.
5.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6. ‘전통사찰’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통사찰을 말한다.

[별지 제3호서식] 폐기물처리 사업·사업변경 계획서

폐기물처리 [] 사업 [] 사업변경 계획서

제출인	① 성명(대표자) 또는 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사업 개요	④ 상호(명칭)			
	⑤ 자원순환관련시설		업종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영업대상 폐기물			
	⑧ 시설·장비 설치예정지			
	⑨ 사무실 예정지			
	⑩ 처리업 사업계획 또는 허가 신청예정일		⑪ 사업착수 예정일	
⑫ 공정도				
⑬ 시설·장비 설치내용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소재지	방지시설명 규격(능력)
제출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작성방법

1. ⑥란은 자원순환관련시설 및 업종을 적습니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2호	업 종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	내 용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1) 중간재 활용업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2) 최종재 활용업	중간가공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영업
	3) 종합재 활용업	중간재 활용업과 최종재 활용업을 함께하는 영업
라. 폐기물 처분시설	1) 중간처분업	소각·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 처분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2) 최종처분업	매립 등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3) 종합처분업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하는 영업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 ⑦란은 생활폐기물,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구분하여 적되, 그 폐기물의 종류는 "폐산"의 경우 "폐산(폐염산·폐황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⑧란은 시설·장비 설치예정지를 모두 적습니다.
- ⑨란은 사무실의 설치예정지를 모두 적습니다.
- ⑩란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또는 허가 신청예정일을 적습니다.
- ⑪란은 시설·장비 설치·확보의 착수예정일을 적습니다.
- ⑫란은 폐기물 처리 공정도를 작성하며 필요 시 구체적인 공정도는 별첨하여 첨부한다.
- ⑬란 중 시설·장비명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운반장비명을, 규격(능력)란에는 처리시설의 경우는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예정시간을, 운반장비의 경우는 적재능력을 적습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2. 3. (생 략) ② ③ (생 략) <신 설>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 ----- ----- 1. 2. 3.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자원순환관련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용도변경 포함)은 별 표 28에 적합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의 허가)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
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
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1의2]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 관련성)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2) 생략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 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 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 도시계획과

조 례 명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 검토 사항 ○ 근거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58조(개발행위의 허가)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1의2]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 관련성)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table border="1"> <thead> <tr> <th>검토분야</th><th>허 가 기 준</th></tr> </thead> <tbody> <tr> <td>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td><td>(1)~(2) 생략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td></tr> </tbody> </table>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 -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조,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3]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2) 생략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2) 생략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주요 사항

- 가구, 학교, 어린이집 및 의료기관이 1,000미터 이내 위치하지 아니할 것
- 하천, 소하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저수지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수도법」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다중이용시설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중 의료기관, 어린이집은 가
목을 따른다.)
- 도로 및 철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관광지, 문화재, 유적지, 서원, 전통사찰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
거리 1,000미터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지난 의원발의 시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행정착오에
의한 누락으로 1종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사항 반영

□ 검토 결과

- 현행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제22조 제③항에 공작물(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이 있으므로, 개정(안)을 제22조 제④항으로 신설하고
구체적 기준은 별표28 신설 필요.
- 지난 의원발의 시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행정착오에 의한
누락으로 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하여 정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 기대효과 : 폐기물처리업체 등의 난립을 제한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주변환경을 보호하고 폐기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점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소요예산 : 없음

- 문 제 점 : 개정 시 자원순환관련 시설의 입지 규제 강화 및 기존 자원순환시설의 용도변경 등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인한 민원 발생 소지 있음.

시·군	자원순환 관련시설에 대한 허가 제한기준	비 고
경주	- 10호 이상 주거지역 200m - 하천으로부터 200m - 관광지, 사찰, 서원 등 200m - 도로법 도로로부터 200m - 「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	자원순환관련시설 (가~마)
김천	- 5호이상 집단취락, 관광지, 정온시설 직선거리 1,000m - 하천, 저수지 직선거리 300m - 왕복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 도시계획도로 직선거리 300m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신고 (지령이분변토, 동식물성잔재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공장, 자원순환관련시설(가~마)
안동	- 5호이상 주거지역 최단거리 500m - 하천 최단거리 500m - 「실내공기질 관리법」 다중이용시설 부지경계로 최단거리 500m - 관광지, 사찰, 서원 등 시설 부지경계로부터 최단거리 500m - 도로로부터 최단거리 500m - 「수도법」 공장설립 제한지역	자원순환관련시설 (다~마)
영천	- 5호이상 실제주민 거주지역 주거지역 최단거리 500m - 도로로부터 최단거리 500m - 하천으로부터 최단거리 500m - 「실내공기질 관리법」 다중이용시설 부지경계로 최단거리 500m - 「수도법」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 관광지, 사찰, 서원 등 최단거리 기준 500m	자원순환관련시설 (가~마)
경산	- 10호이상(호간 이격거리 50m이내 주택) 주거밀집지역 직선거리 700m (다만, 10호 미만 인접주택부지 경계 350m 이격 후 주택수에 30m 곱한 거리 추가 이격) - 「학교보건법」 학교,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의료법」 의료기관 부지경계 700m	폐기물처리업 (수집·운반제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임시
고령	- 자연취락지구, 주거밀집지역 200m(소각, 매립 700m)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200m (소각, 매립 700m) - 도로로부터 50m (소각, 매립 300m) - 저수지 상류 경계 200m (소각, 매립: 저수지, 하천,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 300m) - 관광지,문화재,유적지,전통사찰,서원 등 경계 200m (소각, 매립 1,000m)	자원순환관련시설 (가~마), 폐차장
영덕	- 「도로법」 도로, 하천 직선거리 200m -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호간 이격 100m이내) 직선거리 500m, - 10호 미만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300m	자원순환관련시설 (가~마)
의성	- 자연취락지구,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경계 500m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500m - 「도로법」 도로로부터 200m - 저수지 상류 경계로부터 200m - 관광지, 문화재, 유적지, 전통사찰, 서원 등, 공공시설(학교, 병원 등) 부지 경계로부터 200m	자원순환관련시설 (가~마), 폐차장

검 토 의 건 서

부서명 : 종합허가과

조 례 명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 검토 사항 ○ 근거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주요 사항 ○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 별표 3 제2호 바목 □ 검토 결과 ○ 사전 검토 사항으로 별도 의견 없음.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 기대효과 :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건축허가 시 민원 발생 감소 예상 ○ 소요예산 : 없음. ○ 문 제 점 : 없음.	

검 토 의 건 서

부서명 : 자원순환과

조 례 명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 검토 사항 ○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제2호 가목(3) ○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 주요 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22호 나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자원순환관련시설의 입지 기준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표시사항 변경 시 건축물 용도가 자원순환관련시설일 경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표시사항)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 및 영업 내용과 일치	
□ 검토 결과 ○ 폐기물처리업체 등의 난립을 제한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주변환경을 보호하고자 다수의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자원순환관련시설의 입지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 입지 기준이 되는 시설(가구, 학교, 의료기관, 하천, 다중이용시설, 도로 등)이 생활환경 및 주변환경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조례개정이 필요함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 기대효과 - 폐기물처리업체 등 난립 방지로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 폐기물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점 등 사전 방지로 주변환경 보호	

구미시 도시계획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선언적·권고적 규정으로 재정 소요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자원순환과 자원처리팀 김 수 현(5211)
- 자원순환과 환경7급 김 광 주(5213)